

2018-1학기 외국인 신·편입 특별전형

# 모 집 요 강



**강남대학교**

<http://www.kangnam.ac.kr>

## 창학이념

강남대학교는 기독교정신과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민족과 인류를 위하여 진리·자유·평등·평화·복지를 추구하고 경천애인을 실천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 교훈

敬 天 愛 人

## 교육목적

강남대학교는 창학이념을 바탕으로 진리를 탐구하고 인격을 연마하여 민족과 인류의 번영을 위해 봉사하는 인재를 양성한다

## 교육목표

- 교양인 양성
- 전문인 양성
- 봉사인 양성



## CONTENTS

1. 모집단위 및 인원 .....	04
2. 지원자격 .....	06
3. 전형일정 .....	06
4. 전형방법 .....	06
5. 전형료 .....	06
6. 지원방법 및 절차 .....	07
7. 제출서류 .....	07
8. 학사안내 .....	08
9. 지원자 유의사항 .....	09

### 부록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안내사항 .....	10
1. 등록금안내 .....	10
2. 장학안내 .....	10
3. 기숙사(숙소)안내 .....	11
4. 외국인 보험안내 .....	11
5. 취업안내 .....	11
6. 기타안내 .....	12
7. 아포스티유안내 .....	12
8. 캠퍼스조감도 .....	13
9. 교통안내 .....	14

1. 모집단위 및 인원

※ 신입학

※ 전공별 상황에 따라 모집인원을 제한 할 수 있음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명	모집정원
인문사회	복지융합대학	사회복지학부	약간명
		사회사업학전공	
사회서비스정책학전공			
실버산업학과			
예체능		복지융합인재학부	
		유니버설비주얼디자인전공	
	미술문화복지전공		
		스포츠복지전공	
인문사회	경영관리대학	글로벌경영학부	
		경영학전공	
		국제통상학전공	
		경제세무학과	
		공공인재학과	
인문사회	글로벌인재대학	기독교학과	
		한영문화컨텐츠학과	
		글로벌학부	
		국제지역학전공	
		중국지역학전공	
예체능		음악학과	
공학	ICT건설복지융합대학	소프트웨어응용학부	
		소프트웨어전공	
		가상현실전공	
		IoT전자공학과	
		산업데이터사이언스학부	
		산업경영공학전공	
		데이터사이언스전공	
		부동산건설학부	
		부동산학전공	
도시건축융합공학전공			

## ※ 편입학

※ 전공별 상황에 따라 모집인원을 제한 할 수 있음

계열	단과대학	모집단위명		인원	
인 문 · 사 회		실버산업학부	실버산업학전공	약간명	
	인문대학	신학과			
		철학과			
		국어국문학과			
		문헌정보학과			
		영문학과			
	국제학대학	국제지역학부	캐나다학전공, 중앙아시아학전공, 국제관계학전공, 영미학전공		
		국제통상학과			
	중국학대학	중국어·문화학과			
		중국실용지역학과			
	경영대학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사회과학대학	경제학과			
		법학과			
		행정학과			
부동산학과					
세무학과					
사회복지대학	사회복지학부	사회사업학전공			
자 연	공과대학	컴퓨터미디어 정보공학부	컴퓨터공학전공, 미디어정보공학전공		
		전자공학과			
		산업시스템공학과			
		응용수학과			
		도시공학과			
		건축공학과			
예· 체 능	예·체능대학	회화·디자인학부	회화전공		
			산업디자인학전공		
		음악학과			
		사회체육학과			

## 2. 지원자격

\* 개정국적법(2010.05.01)에 따라, 복수국적자인 외국인은 본교 외국인 신입입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가. 신입생 특별전형

※ 초·중등 12년 과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한(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로서,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

- 1)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2) 외국에서 대한민국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외국인 학생

### 나. 편입생 특별전형

※ 신입생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

- 1) 정규 4년제 대학교 졸업(예정)자
- 2) 정규 4년제 대학교 교육과정 2년 이상 수료한 자(3학년 편입자격 인정)
- 3) 정규 4년제 대학교 교육과정 1년 이상 수료한 자(2학년 편입자격 인정)
- 4)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다. 어학능력 구비조건

※ 상기 신입생 또는 편입생 특별전형 자격에 부합하며, 아래 각 항목에 해당하는 자

- 1) 공인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취득자
- 2) 강남대학교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자
- 3) 타 대학(4년제)어학교육원 취득 등급이 강남대학교 한국어능력시험 3급에 준하는 자  
- TOPIK 4급을 취득하여야 졸업이 가능함

## 3. 전형일정

구 분	일 시	비 고
원서접수	2017.11.20(월) ~ 12..08(금) 09:30 ~ 17:00	본교 대외교류센터 또는 중국사무소 (중국내 신청자에 한함)
합격자 발표	2017.12.29.(금) (예정)	개별통지
등록기간	2018.02.20(화) ~ 02.26(월)	본교 국민은행(살롱관 1층)

## 4. 전형방법

※ 서류심사(100%) - 수학능력, 어학능력, 학업계획서등 제출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발

## 5. 전형료

※ 전형료 없음

## 6. 지원방법 및 절차



## 7.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명	비고	
공 통	입학원서(칼라사진 2매 / 3.5cm X 4.5cm)	본교 소정 양식	
	학업계획서(국문)		
	학력 조회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호구부(호적등본) 1부	중국에 한함	원본(본인, 부, 모)
	친족(가족)관계증명(동일호구가 아닐시)		한글 또는 영문공증본
	보호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원본
	여권사본 1부		
	외국국적증명서 사본		본인, 부, 모 (신분증 사본)
	본인 또는 부모 명의의 미화 \$20,000에 상응하는 은행 예금잔고증명서		6개월 이내의 서류만 가능
	출입국 사실증명서 및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앞, 뒷면 복사)		국내 거주 외국인에 한함
신 입	1) 공인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성적증명서 2) 강남대학교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자 3) 타 대학(4년제) 어학교육원 취득 등급이 강남대학교 한국어능력시험 3급에 준하는 어학능력 증서	택 1 원본(소지자에 한함)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1부	사본(영사 인증)	
편 입	고등학교 전체 학년 영문 성적증명서 1부	원본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1부	사본(영사 인증)	
	고등학교 전체 학년 영문 성적증명서 1부	원본	
	대학졸업(예정 또는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원본	
	출신대학 교수추천서 1부		

### ※ 서류 제출처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로 40 강남대학교 본관 116호 대외교류센터(우편번호 16979)

Tel : 82-31-280-3611

- 中国 山东省 临沂市 临沂大学 中韩学院 C208 临沂 世宗学堂内 中国办事处 (邮编276005)

Tel : 86-539-8766926

- 1) 졸업장, 호구부,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원본을 제외한 기타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2)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번역 공증 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중국내 요구 일부서류 제외).

- 3) 아포스티유 가입국의 경우 외국에서 발급된 문서는 **한글공증본 및 아포스티유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아포스티유 협약 확인서 - 12페이지 참조).
- 4) 중국인 신청자는 국내 공자아카데미 또는 중국교육부 발행 학력인증보고서가 필수입니다.  
인증기관: CHSI 중국고등교육 학생정보망([www.chsi.com.cn](http://www.chsi.com.cn))
- 5) 한국어능력시험(TOPIK) 성적증명서는 서류심사 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6) 제출된 서류상의 이름이 각각 다를 경우에는 해당국 법원이나 공관장 발행의 동일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상기 제출서류 외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학력인증관련 아포스티유 확인서, 공자아카데미 학력확인서, 중국교육부학력조회 보고서 등

## 8. 학사안내

### 가. 학부제 / 학과제

- 학부제란 “공통된 학문의 영역 속에서 학과나 전공을 두어 기초에서 세분화된 전공에 이르기까지 교육과정이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체계”를 말합니다. 학부 입학생들은 학부내의 전공 중에서 자유로이 전공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으며, 졸업 학기에 이수한 학점을 심사하여 전공을 확정하게 됩니다.
- 학과제 : 2009학년도 본교 신입생부터 적용중인 학과 중심의 교육체제입니다.

### 나. 제1전공

소속 학부(과) 내에서 1개 전공을 선택하여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전공을 말합니다.

### 다. 심화전공

제1전공 교육과정에서 심화학습이 가능하도록 일정 학점이상 전공을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 라. 다전공

제1전공 이외 동일 학부내 타전공 또는 타 학부(과)에 개설된 전공을 소정 학점 이상 이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전공은 각 항목과 같습니다.

#### 1) 복수전공

제1전공 이외에 소속 학부(과) 내 다른 전공 또는 타 학부(과)에 개설된 전공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 할 경우 제2전공 또는 제3전공으로 인정하는 전공을 말합니다.

#### 2) 부전공

제1전공 이외에 소속 학부(과) 내 다른 전공 또는 타 학부(과)에 개설된 전공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할 경우 부전공으로 인정하는 전공을 말합니다.

#### 3) 연계전공

제1전공 이외에 본교에서 정한 2개 이상의 학부(과)의 전공이 연계하여 새로운 영역을 이수하게 하여 인정하는 전공을 말합니다. (“교양 및 전공이수에 관한 규정” 참조)

#### 4) 자율설계전공

제1전공 이외에 학생 개인이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이수하는 전공을 말합니다.

### 바. 주 · 야간 교차수강

학기당 9학점 이내에서 주 · 야간 교차수강을 허용합니다.

## 사. 전과(부) 제도

전과(부)제도는 학생의 적성, 흥미, 소질에 맞는 새로운 전공영역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2, 3학년 매 학기 초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체능학부로의 전과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 9. 지원자 유의사항

- 가. 제출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자격이 없는 자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 나. 월반과 조기 졸업은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 입학원서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합격자 발표 시 연락두절 등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라. 지원 자격 부적격자가 반환기간(개별통지)까지 찾아가지 않은 서류는 폐기할 수 있습니다.
- 마. 입학전형 평가내용은 일체 공개하지 않습니다.
- 바. 외국인 특별전형으로 입학한 외국인 학생에 대하여는 등록금 분할 납부를 제한합니다.
- 사.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일반휴학은 불가합니다.
- 아. 본교에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본교 기숙사에 거주하여야만 합니다.
- 자. 본 모집요강에 기재된 관련 비용은 지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함이며 사전고지 없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차. 본 모집요강 내용 중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의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카. 기타 사항은 본교 **대외교류센터(+82-31-280-3611)**로 문의 바랍니다.

##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안내사항

### 1. 등록금 안내

가. 본과(첫학기)

(단위: 원)

계 열		입학금	수업료(신/편입)
			1,2,3,4 학년
인문·사회 계열		893,000	3,403,000
자연·예체능 계열	체능계열 (사회체육학과, 복지융합인재학부, 스포츠복지전공)	893,000	3,997,000
	공학계열		4,319,000
	예능계열		4,563,000

\* 상기 금액은 2017년 10월 기준으로 추후 변동 가능함

### 2. 장학안내

장학금 구분		지급기준		장학금 지급액
		수혜자격	기준 성적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A급	외국인 재학생의 성적상위 10% 이내	3.0 이상	학년수석 상당액(67%)
	B급	외국인 재학생의 성적상위 30% 이내		학년우수 상당액(47%)
	C급	외국인 재학생의 성적상위 70% 이내		수업료 30%
	D급	외국인 신·편입생	첫 학기	수업료 47%
	E급	외국인 신·편입생 및 재학생	2.5 이상	기숙사비 25%

\* 성적장학금 신청 가능 취득학점 : 1, 2, 3학년 - 16학점이상, 4학년 - 12학점이상 대상자중 석차순으로 차등 지급함

\* 학칙에 따라 변동 적용 될 수 있음

### 3. 기숙사(숙소) 안내

가. 외국인 유학생은 기숙사에 우선 배정합니다.

나. 외국인 유학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본교 기숙사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 외국인 유학생은 졸업 시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단위: 원)

숙소 종류	수 량	방 유형	비용(한학기)	부대시설 및 식사
심전1관	남 220	4인 1실	632,000	- 침대, 옷장, 책상, 의자 - 헬스장, 샤워실, 식당, 휴게실, 세탁실, TV/VTR 시청실, 매점, - 각 방 LAN설치
	여 244	4인 1실		
심전2관	남 147	2인 1실	1,162,000	
	여 213	2인 1실		

\* 상기 금액은 2017년 10월 기준으로 추후 변동 가능함

#### 4. 외국인 보험가입 안내

입학자는 학교에서 지정한 보험사에서 의무적으로 보험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 5. 취업안내

외국인유학생은 재학 중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이 일부 허용됩니다. 본교 재학 중 시간제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아래와 같이 취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허가 없이 시간제취업(아르바이트)을 한 외국인 유학생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반드시 대외교류센터를 방문하여 취업허가서를 작성하기 바랍니다.

<b>취업허용대상</b>	- 유학(D-2) 자격 소지자로 학교 유학생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자
<b>취업허용시간</b>	- 학기 중 주당 25시간 이내(인증대학)로서, 원 아르바이트 장소 등 2개 장소까지 허용 - 학기 중 공휴일(토요일 포함) 및 방학 중 무제한(주당 허용시간 산정 시 제외) - 체류기간의 범위 내에서 최장 1년
<b>취업허용 및 제한분야</b>	① 취업허용 - 전공과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직종 - 사회통념상 학생이 통상적으로 행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직종 단, 각 분야의 해당법령에서 정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함 ② 취업제한분야 - 산업기밀보호차원에서 취업제한이 필요한 첨단산업체와 연구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2조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2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에 취업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 21조제 2항 및 동법시행령 제 7조제 8호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접객원으로 근무하는 행위 -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 중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과외 교습 행위 - 기타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활동 및 기타 법무부장관이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분야
<b>제 출 서 류</b>	①시간제 취업 확인서(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소정양식) ②사업자등록증(고용주) ③ 수수료 : 없음
<b>신 청 방 법</b>	취업 장소 등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인 또는 대학의 유학생담당자가 직접 방문 또는 전자민을 통해 취업 장소 등 변경 신고
<b>제 한 대 상</b>	최근 이수학기 <b>합계</b> 출석률 70% 이하이거나, 평균학점(이수학점 기준) C학점(2.0) 이하인 자로 학업과 취업행위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b>제 출 처</b>	본교 본관 1층 대외교류센터 (+82-31-280-3422)

## 6. 기타 안내

- 1)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의거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유학생에 대하여는 2주 이내에 관할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보고해야 합니다.
  - ① 재학 중 매 학기 등록기한 내에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한 경우
  - ② 자퇴, 제적, 졸업, 행방불명, 기타사유로 유학 목적이 종료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③ 출결사항이나 학업성적이 극히 불량하여 유학생생활을 계속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조치를 취한 경우
  - ④ 불법취업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형사 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⑤ 체류지(거주지) 주소가 변경된 경우
  - ⑥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인해 여권번호가 변경된 경우
  
- 2)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 처리하며 납입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① 한국어과정 이수자로서 1년 이내에 한국어과정 초급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 ② 등록기간 내에 미등록한 경우
  - ③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은 경우
  - ④ 3회 이상 학사경고를 받은 경우
  - ⑤ 전 과목 과락을 한 경우
  - ⑥ 타 대학에 입학한 경우
  - ⑦ 퇴학처분을 받은 자
  - ⑧ 불법취업 등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거나 국내법을 위반하여 형사 처벌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 7. 아포스티유 협약 확인서 안내

1) “아포스티유 협약”이란 :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해,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 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 (Legalization)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입니다.

### 2)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방법

가. 외국에서 재학·졸업하였던 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을 발급 받은 후,  
나. 외국 학교에서 발급받은 각종 증명서에 대하여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당해 학교 소재 국에서 지정한 정부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기관은 해당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입니다.

※ 아포스티유 협약 국이 아닌 경우 기존처럼 학교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해당국가의 외교·영사기관에서 “학력인정확인서”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대입 원서 접수 시 외국학교 발행 각종 증명서와 아포스티유 확인서(또는 재외교육기관확인서, 영사확인)를 함께 제출합니다.

#### 라.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대상

- 국·공립학교 발행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 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 중 해당국 공증기관이 공증한 문서

※ 사립학교 공문서 및 각종 증명서는 공증(한글)받은 후에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 신청해야 합니다.

다.

### 3) 참고사항

※ 아포스티유 협약과 관련한 자료는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인(www.0404.go.kr)에서 자세히 알 수 있으며, 아포스티유 확인 제도 전용 상담전화(02-2100-7500) 또는 영사콜 센터 (02-3210-0404)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

지역	국가명
아시아, 대양주 (17)	호주, 중국 일부(마카오, 홍콩), 일본, 뉴질랜드, 브루나이, 몽골, 쿡제도, 피지, 인도, 마셜군도, 모리셔스, 바누아투, 사모아, 통가, 니우에, 타지키스탄
유럽 (52)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몰타,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러시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키르기스스탄, 마케도니아,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리히텐슈타인, 산마리노,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코소보
북미 (1)	미국
중남미 (28)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수리남, 베네수엘라, 앤티가바부다, 바하마, 바베이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연방, 도미니카공화국,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빈센트, 페루, 트리니다드토바고,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코스타리카, 우루과이, 니카라과, 파라과이, 브라질, 칠레, 과테말라
아프리카 (11)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 브룬디,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상투메프린시페, 스와질랜드, 말라위, 카보베르데, 세이셸
중동 (4)	오만, 이스라엘, 바레인, 모로코

출처 및 편집: 외교부 아포스티유 가입국 현황(2017.09.21. 기준)

8. 캠퍼스 조감도



